



## ■ 축협중앙회 86년 정기총회



(이 득룡 회장)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는 지난 2월25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황인성농수산부장관, 김식국회농수산위원회장을 비롯 전국회원 조합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보고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사업규모 7천2백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이득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필코 해결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일에 충실했다면 축산입국과 선진조국 건설은 앞당겨 질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농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자급자료의 증산과 이용확대는 물론 사육기반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적정생산을 꾀해 축산물의 수요 및 가격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고 축산시책에 대해서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양축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값안정은 물론 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85우수 조합에는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조합

으로 뽑힌 경산축협이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진천축협 등 14개조합도 업무평가 우수조합으로 중앙회장을 각각 수상했다.

## ■ 부화업자회의 개최

농수산부는 양계 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부화업자회의를 지난 3월 4일 오전10시 농수산부회의실에서 전국대규모부화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양계 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각부화장에서 입란을 조정하여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 ■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사회 개최



(송찬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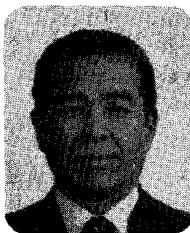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2월 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3억8천 7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회원가입에 관한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은 종전 회원가입이 이사회 승인제도였던 것을 회원이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자율 가입으로 개정하고 단체회원제 실시와 단

## ● 기관·단체소식

체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 양돈협회 정기 총회



(전 동룡 회장)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월 18일 63빌딩 별관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전동룡 회장을 유임시키고 19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또 4개항의 대정부건의서를 작성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이어 부의된 안건심의에 들어가 5억 9천만원의 86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85년도 결산안 △86년도회비 부가기준안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작성키로한 대정부건의서는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유통구조 개선방안 △돈육의 군납중단조치에 대한 전의 △지역축협 양돈장 전립 재검토전의 등 4개안이다.

### ■ 축산과학연구소 개명



(한 석현 소장)

전국대학교 부설 축산경영연구소가 1월 1일 부로 축산과학연구소(소장: 한석현)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본 연구소는 국제농업의 경향과 추세에 호응키 위해 한국농업구조개선과 농업소득향상 방안으로 축산과 축산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술, 기술, 국제발전동향을 연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68년 5월 1일 축산경영연구소로 발족한 바 있다.

동 연구소는 현재까지 연구논문집 10편을 발행하였으며 △축산전반에 걸친 경영분석, 생산구조조사자원 및 미생물응용연구 △축산물가공처리 △가축위생, 질병 △학술연구자료 수집 및 교류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연구원 42명, 연구보조원 4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부서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 소장: 한석현박사(전대 축산대학장)
- 간사: 맹원재박사
- 가축육종·번식연구부장: 정길생박사
- 가축사양 사료연구부장: 윤희섭교수
- 축산물가공처리 연구부장: 최병규박사
- 축산경영 연구부장: 윤효직박사
-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창원박사
- 초기연구부장: 윤익석박사

### ■ 가축번식학회 (회장 정영채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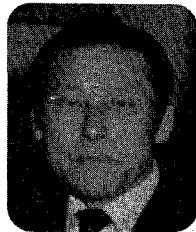
(정 영채 회장)

금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2월 15일 오후 3시 전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휴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회칙수정,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분과위원회조직, 학술발표회개최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였다.

### ■ 한국동물약품 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오직)은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오직 이사장

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86사업계획 및 예산과 이사회에 위임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조합설립에 따른 예산 회계규정과 계약규정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 ■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설동섭)

설동섭소장은 25일 본회 회장단을 맞아 앞으로 양계협회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관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 연구소에 전의해주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는 도계장을 통한 방역업무 강화와 계균혈청검사를 통한 질병예찰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축가들이 ND, ILT등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어 협회에서 이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하여주고 종계장에서도 추백리검색 등 종계의 위생관리에 더욱 주력하도록 협회의 노력을 부탁하였다.

한편 양축가들이 원하는 백신수입을 국내 메이커의 경쟁력(품질가격) 향상과 새로운 제품개발 자극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좋으며 완전 개방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자제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 ■ 농수산부훈령 제623호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릴령한다.

1986년 2월 28일

농수산부장관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등의 취소·정지  
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제 1 조(목 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 및 축산업의 등록취소·허가취소, 법 제14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 수정(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취소·업무정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증거에 의한 행정처분)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를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행정처분기준) ① 종축업·축산업·부화업 및 수정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② 별표1 및 별표2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각각 해당 위반사항이 있은 날이 전 최근 1년간의 기간중에 동표에서 정한 같은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위반행위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되, 처분 기준이 같은 영업정지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행정처분의 감경) 처분청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침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종축업·축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조정) 처분청은 종축업·축산업 또는 부화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

## ● 기관·단체소식

별표 1. 종축업·축산업·부화업 및 가축인공수정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 2 조 관련)

업 종 별	위 반 사 항	해 당 법령조항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종 축 업	1.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명령을 영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 부과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제 6 항	등록취소		
축 산 업	2.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명령을 영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제 6 항	등록또는 허가취소		
부 화 업	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축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부화업 허가기준의 제 1호·제 2호 또는 제 4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규칙 별표 2 부화업허가기준의 제 3호 각목의 1의 기준에 미달한 때 또는 동기준 제 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법 제13조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시설을 변경한 때 5. 휴업 또는 영업재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로 신고한 때 6. 법 제13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4조 제 7 항 제 1 호  법 제14조 제 7 항 제 2 호  법 제14조 제 7 항 제 2 호  법 제14조 제 7 항 제 3 항  법 제14조 제 7 항 제 4 호  법 제14조 제 7 항 제 5 호	허가취소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경 고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3 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 월  영업정지 6 월  영업정지 6 월
가축인공수정소	(생 략)				

취소처분을 험에 있어서는 45일의 범위안에서 이미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매각등 처분을 험에 있어서는 45일의 범위안에서 이미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매각등 처분을 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한 행정처분은 이 훈령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 ■ 제32차 가축 질병 예찰 협의회 개최

#### -의사 IB 발생-

금년도 제32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설동섭박사)가 지난 2월 28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장과 진홍청 관계관, 축산시험장 관계관, 수의사회, 축종별 생산자단체, 동물약품협회, 연구소 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질병발생 동향을 검토하고 환절기 전염병 발생대책과 지역별 가축질병 홍보강화 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닭질병의 경우 종제장의 추백리 검진 유도와 종계

장에 대한 확인검진 강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의사 IB(닭전염성 기관지염) 발생 대비책도 논의 되었다.

### ■ 월간 한성 창간

- 축산업 종사자 대상 3월초 -



사회단체 한성협동회 중앙회(회장 윤홍기)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협회보(월간한성) 발간에 앞서 이를 기념하는 동사 사무실에서 윤기홍회장 등 관련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양재근사장(월간한성)은 한성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각종 축산기술 및 시장정보, 2세들의 교육문제, 양로사업 확대 등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한센씨병(나병)에 대한 올바른 계몽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월간한성의 발간목적은 한센씨병으로 고통받는 이

들에게 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101개 지역 2만 8천 세대 정착촌의 축산정보, 교양, 아동교육정보를 제공 자활기반 육성을 위하고 활성화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창간호의 크기는  $4 \times 6$  배 판으로 약 150페이지에 달하며 발행부수는 1만부 예정으로 3월초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 ■ 미국의 육가공산업세미나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룡), USFGC(회장 박영인)는 미국 육가공산업 세미나를 학계 업계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오후 미 문화원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죄슬 쓰브레너박사(아이오주 주립대 육가공학)는 요즘 미국의 소비자를 태도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좋은 식사가 좋은 건강과 직결되고, 지방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육류는 지방, 염분 콜레스테롤 및 첨가제 문제와 관련된다는 말들이 나도는 것이 그것으로 육류의 가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육류가 더 이상 독특하고 필수불가결의 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 공급원중의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단백질 식품과 정면 경쟁해야 함은 불가피하므로 지방이 적은 닭고기 등의 요리가 소비자들의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혔다.

## 3월 육계분과위원회 및 선진지 시찰

- 일 시 : 86. 3. 31(월) <당초 27일 예정에서 변경>
- 시찰지 : 유명 동물약품사, 선진지 견학
- 신 청 : 본회 사무국(752-3571~2)

당일 본회에서 육계분과위원회를 마친 후 출발 예정임.